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00. 3.24.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99. 8.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결명령제 시행,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5톤미만 건설페기물의 생활폐기물 분류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건설페기물의 범위를 총전 1톤이상에서 5톤이상으로 정하여 5톤미만 건설페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배출시 특수규격봉투 사용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6조, 제13조)
- 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청결명령 불이행시 구청장이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의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1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이상 발생하는 폐기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 및 제4조의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결명령 등)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토록 명할 수 있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형성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의1(포상금 지급) ①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뮤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담는다.

별표3 규격봉투가격 중 특수규격봉투가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소량의	건설폐기물 전용	비 고
50 ℓ		2,18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일반폐기물”.....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 과정에서 1회에 1톤이상이나 1주에 1톤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 솔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콘, 폐불려, 폐돌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건축·토목 등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이상 발생하는 폐기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재활용가능품”이라함은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2항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토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